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.

발 의 자 : 김현정 · 김문수 · 민병덕
박홍배 · 권향엽 · 송옥주
이강일 · 박희승 · 남인순
강준현 · 김남근 · 진성준
이재관 · 최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,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.

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,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

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
자 함(안 제34조 및 제45조)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후단 중 “5천만원을”을 “50억원을”로 한다.

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중 “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.

1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2.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<u>5천만원</u>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	제34조(과징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억원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	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
제45조(과태료) ① <u>제32조의4제1 항을 위반하여</u>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	제45조(과태료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.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6의4. (생 략) 7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 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8. (생 략) ⑤ ~ ⑧ (생 략)	1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 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2.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6의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8. (현행과 같음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--	---